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5. 25.

제 출 자 :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주민자치과 설치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제3항중 “주민자치과장” 을 현행 “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” 으로 수정함.

3. 참 고 사 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
- 자치행정과-2283(“04. 3.20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조정승인(협의)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 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제3항중
“주민자치과장” 을 현행 “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” 으로 수정함.

수정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1조(목적)(생략)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82명</u> ----- ----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57명</u> 2.(생략)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~②(생략) ③-----<u>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</u>----- ----- -----	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1조(목적)(현행과 같음)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<u>1,400명</u>----- ----- 1. ----- : <u>1,375명</u> 2.(현행과 같음)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<u>주민자치과장</u>----- ----- -----	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1조(목적)(개정안과 같음) 제2조(정원의 총수) (개정안과 같음)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~②(개정안과 같음) ③-----<u>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</u>----- ----- -----